

의안번호	2203729
의 퇴 인	이훈기 의원
회 답 일	2024. 9. 25.
추 계 번호	24B354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신설)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현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의무규정
		공사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30조의2 (기금의 설치 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 이 경우 제5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함(제3항)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유통구조 개선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 5. 그 밖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제5항)	
		심의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0조의2 (기금의 설치 등)	

2. 상세 사유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29조)

-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업 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 개정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법률안에서 정부광고 업무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운영을 위해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확대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¹⁾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의 사업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보조금 등의 추가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최근 3개년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정부지원수입	직접지원	출연금	-	-	-	-	-	-	정부 보조금
		보조금	9,310	6.2%	10,662	6.9%	11,274	8.9%	
		부담금	-	-	-	-	-	-	
		이전수입	-	-	-	-	-	-	
		부대수입	-	-	-	-	-	-	
	간접지원	사업수입	133,941	89.4%	135,081	87.0%	107,966	84.9%	광고판매, 임대수익 등
		위탁수입	-	-	-	-	-	-	
		독점수입	-	-	-	-	-	-	
		부대수입	6,440	4.3%	9,171	5.9%	7,187	5.7%	
	소계		149,691	99.9%	154,914	99.8%	126,427	99.4%	
기타사업수입		-	-	-	-	-	-	잡이익	
부대수입		-	-	-	-	-	-		
출자금		-	-	-	-	-	-		
차입금		-	-	-	-	-	-		
기타		183	0.1%	384	0.2%	759	0.6%		
합계		149,874	100.0%	155,298	100.0%	127,186	100.0%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30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통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2]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대상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회 계	지원대상	사업명	2024년도 예산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	공통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2,868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2,356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개별	국악방송지원	5,842
			아리랑국제방송지원	13,43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현행 사업들의 재원이 대부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대상,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제작·유통구조 개선과 인력양성·교육·조사·연구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²⁾

2) 안 제30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 참고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수는
2024년 9월 기준 35개임

[표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구 분		방송사업자명
지역방송 사업자 (29개사)	지역MBC (16개사)	춘천MBC, MBC강원영동, 원주MBC, MBC충북, 대전MBC, 안동MBC, 대구MBC, 포항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MBC, 전주MBC,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제주MBC
	지역민방 (10개사)	지원방송, 청주방송, 대전방송, 티비씨, 울산방송, KNN, 전주방송, 광주방송, 제주방송, OBS경인TV
	지역라디오 (3개사)	경인방송,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중소방송사업자 등 (6개사)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YTN라디오

주: 1) 2024년 9월 기준
2) 중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Ⅲ. 부대의견

□ 없음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유통구조 개선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
5. 그 밖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